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958호 2015년 10월 8일(목)

공 고

○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정 입법예고…… 2

회 람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2015 - 645호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속 초 시 장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폐수 배출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부담과 궁극적으로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무를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전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마. 운영관리비 등 부담금은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사업자 대표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경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 033-639-2471 (FAX 033-639-2465)

4. 참고사항

속초시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은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오・폐수의 유입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시장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은 배수설비의 구조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정은 내경 15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부분에는 내경이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하

여야 한다.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 형식은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사업자가 제5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에 의한다.

1.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비고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4조(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동처리구역내에서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리관리비의 세부산출은 물가변동 등의 실정과 실측자료를 감안하여 작성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대표회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조사토록 할 수 있으며,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유지관리비 납무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정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무의무를 진다.

제18조(유지관리비 부과방법) ① 시장은 제16조의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차집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 징수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기본부과금의 부담

제20조(기본부과금의 부담 및 부과방법) 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람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영우에는 처리시설을 운영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시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 ①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제6장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부담금의 사용) ① 기본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교체·보안 및 신규투자

2. 기본배출부과금 선납부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 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5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담금 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서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2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장 사업자 대표회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대표회는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한다.

② 사업자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사업자대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제35조(의결)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 표]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1. 유지관리비

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As = aM\ \frac{Qi}{Qt} + bM\left(c\ \frac{Qi}{Qt} + d\ \frac{Bi}{Bt} + e\ \frac{Ci}{Ct} + f\ \frac{Si}{St} + g\ \frac{Ni}{Nt} + h\ \frac{Pi}{Pt}\right)$$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

M : 월간 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재투자 적립금

· 직접경비 :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직접경비의 10%)

· 시설재투자 적립금 : 처리장 시설의 보완, 개선, 고정자산의 구입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시설소요자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Q : 오수·폐수 배출량

Qt : 전 업소의 오수·폐수 배출량

Qi : 개별업소의 오수·폐수 배출량

B : BOD 부하량

Bt : 전 업소의 BOD 부하량

Bi : 개별업소의 BOD 부하량

C : COD 부하량

Ct : 전 업소의 COD 부하량

Ci : 개별업소의 COD 부하량

S : SS부하량

St : 전 업소의 SS 부하량

Si : 개별업소의 SS 부하량

N : T-N 부하량

Nt : 전 업소의 T-N 부하량

Ni : 개별업소의 T-N 부하량

P : T-P 부하량

Pt : 전 업소의 T-P 부하량

Pi : 개별업소의 T-P 부하량

[a,b,c,d,e,f,g,h : 폐수종말처리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 b=1 , c+ d+ e+ f+ g+ h=1)]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기본요금}}{\text{유지관리비}}\right)$$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처리요금}}{\text{유지관리비}}\right)$$

c : 처리요금 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유량배분요금}}{\text{처리요금}}\right)$$

d: 처리요금 중 B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BOD부하 배분요금}}{\text{처 리 요 금}}\right)$$

e : 처리요금 중 C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COD부하 배분요금}}{\text{처 리 요 금}}\right)$$

f : 처리요금 중 SS부하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SS 부하 배분요금}}{\text{처 리 요 금}}\right)$$

g : 처리요금 중 T-N 부하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T-N부하 배분요금}}{\text{처 리 요 금}}\right)$$

h : 처리요금 중 T-P 부하에 대한 배분율

$$\left(\frac{\text{T-P 부하배분요금}}{\text{처 리 요 금}}\right)$$

※ 속초해양산업단지 여건에 따라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년간 시설투자적립금 (E) = Ei × Fi

1)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처리시설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처리시설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속초시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0/10,000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체

- 배출업체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체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체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체

- 유량계를 설치한 업체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체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체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체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체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

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오수 채수시 시장 또는 위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mg/ℓ, COD : mg/ℓ, SS : mg/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제5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5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장 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단도·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 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속 초 시 장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월

신 고 인 : (인)

속 초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법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부 담 근 거			
수 량	B O D	C O D	S S
㎥/일	mg/ℓ	mg/ℓ	mg/ℓ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속초시장 귀하

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장

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장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금 액	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3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독 촉 장

상 호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기본배출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 기업지원(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의5(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6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제62조(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63조(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비용부담금의 총액)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원인자의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법 제48조의2에 따라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액은 그 사업활동이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제65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 등) 시행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6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6.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6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부담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영 제67조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7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72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